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86
----------	-------

발의연월일 : 2026. 6. 16.

발 의 자 : 허 영 · 김영환 · 박균택  
홍기원 · 한민수 · 박상혁  
송옥주 · 조인철 · 황정아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 표시·광고, 차별·편견을 조장하거나 인신매매, 인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서 결혼중개 광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제결혼 상대방 여성의 얼굴, 키, 몸무게 등 프로필을 노출시켜 성을 상품화하거나 국가·인종 등에 대한 차별·편견을 조장하는 광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가 SNS 등을 통하여 은밀히 영업하면서 국제결혼중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또한, 국제결혼에 대한 지식·경험이 부족한 중개 서비스 이용자들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 계약서에 없는 추가비용 요구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중개업

체에서 국제결혼 상대방의 결혼이민에 필요한 사증 발급 기준·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여 이용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 중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결혼 상대방이 사증 발급을 거부당하여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사례도 있음.

이에 결혼중개 거짓·과장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혼중개업자의 중개계약 체결 관련 준수 의무, 결혼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중개업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결혼중개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고,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안 제4조의 3제1항 및 제6조의2 신설).
- 나. 결혼중개업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업 또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 및 신고번호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함(안 제8조제2항).
- 다. 결혼중개업자는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그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표시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함(안 제10조제6항 신설).

- 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미리 상대방의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요구되는 기준 및 절차를 확인하여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서로 작성하여 이용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함(안 제10조의4 신설 및 제10조의5제1항제4호).
- 마.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결혼중개 표시·광고의 거짓 또는 과장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거짓·과장 등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위원회에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2조의2 신설).
- 바.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책임성 및 윤리의식 강화를 위하여 매년 4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함(안 제24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등 등록사항과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 업무에 관한 사항 및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등 등록사항”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① 특별자치

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회의 범위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를 “결혼중개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영업 또는 결혼중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로, “인터넷 홈페이지에”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에”로 한다.

제1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결혼중개업자는 제5항에 따른 표준 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 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를 각각 제10조의5 및 제10조의6으로 하고,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절차의 확인·설명)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이용자의 상대방이 결혼에 따른 동거(이하 “결혼동거”라 한다)를 목적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미리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설명을 한 때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용자의 서명을 받고 확인서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5(중전의 제10조의4)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작성된 확인서

제12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정보통신망 표시·광고 모니터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결혼중개에 관한 표시·광고가 제12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통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2조의 규정에 대한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를 발견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4호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

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제13호 중 “제10조의4제1항”을 “제10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제10조의5를”을 “제10조의6을”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제12조의2를”을 “제12조의3을”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를 “매년 4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를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제26조제2항제5호 중 “제10조의5”를 “제10조의6”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2조의2를”을 “제12조의3을”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6.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자
7.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서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2제2항의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9.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0조제6항,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4조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의3(지도점검)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u>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등 등록사항과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 <u>&lt;신설&gt;</u></p>	<p>제4조의3(지도점검) ① ----- ----- ----- -----<u>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 업무에 관한 사항 및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등 등록사항</u>----- ----- -----.</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생략)

②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① ~ ⑤ (생략)

<신설>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회의 범위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현행과 같음)

② 결혼중개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영업 또는 결혼중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에-----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결혼중개업자는 제5항에 따

<신 설>

큰 표준 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 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의4(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절차의 확인·설명)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이용자의 상대방이 결혼에 따른 동거(이하 “결혼동거”라 한다)를 목적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미리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설명을 한 때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용자의 서명을 받고 확인서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

제10조의4(기록보존) ① 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생략)

제10조의5(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 등의 금지) (생략)

<신설>

여야 한다.

제10조의5(기록보존)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작성된 확인서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6(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 등의 금지) (현행 제10조의5와 같음)

제12조의2(정보통신망 표시·광고 모니터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결혼중개에 관한 표시·광고가 제12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통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2조의 규정에 대한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를 발견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4호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기록물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

14. 제10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  
한 방법의 모집·알선 행위나  
부당한 금품 징수행위를 한  
경우

14. 제10조의6을-----  
-----  
-----  
---

15. ~ 17. (생략)

15. ~ 17. (현행과 같음)

18.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  
중개 행위를 한 경우

18. 제12조의3을-----  
-----

19. ~ 24. (생략)

19. ~ 2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교육)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4조(교육)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  
-----매년 4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  
-----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③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2년마다 1회



10. (생략)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

10. (현행과 같음)  
제28조(과태료) ① -----  
-----  
-----  
-----.

1.·2. (현행과 같음)

6.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자

7.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서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2 제2항의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9.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② (현행과 같음)

③ -----  
-----  
-----성평등가족부장관 또

<p><u>· 군수 · 구청장이</u> 부과 · 징수 한다.</p>	<p>는 <u>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u> <u>· 구청장</u>-----.</p>
---	---